

## 지역/직장 자동이체 신청서

● 지역가입자 (  건강보험  국민연금 )

납부자번호		납부자명	
주민등록번호		연락처	
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
예금주		예금주주민번호	
예금주 연락처			
자동이체 시작 월	( )월분 보험료부터 ( <input type="checkbox"/> 당월 말일 <input type="checkbox"/> 익월 10일 ) 출금 신청		

● 사업장 (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)

통합납부자번호		사업장명	
사용자 성명			
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장관리번호	
사업장 연락처		예금주연락처	
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
예금주		예금주주민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자동이체 시작 월	( )월분 보험료부터 ( <input type="checkbox"/> 당월 말일 <input type="checkbox"/> 익월 10일 ) 출금 신청		

[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- 수집 및 이용목적 :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
- 수집항목(개인정보) :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계좌정보 | 수집항목(고유식별정보) : 주민등록번호
- 보유 및 이용기간 :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
-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(개인정보) 동의함  동의안함  | (고유식별정보) 동의함  동의안함

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(거래금융기관명, 영업점명,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'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'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일: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

신청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날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## 4대 사회보험료 납부!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!



① 고지서 분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

- 매월 10일(공휴일시 익일)은 4대 사회보험료 납부마감일입니다.



② 금융기관이나 공단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-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.



③ 각 보험별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지역 건강보험(납기 내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)
- 지역 연금보험(자동이체 완납 시 해당월 보험료에서 230원 감액)
- 고용, 산재보험(납기 내 자동이체 완납 시 당월 보험료에서 각 250원 감액)



④ 국민연금 정기보험료 선 출금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.

- 2011년 1월 고지분 부터 정기보험료 선 출금일이 25일 에서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.



⑤ 고용, 산재보험료 납부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
- 연납, 분기납 에서 월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(단, 건설, 별목업 제외)

국민이 내주시는 소중한 보험료!  
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



## 4대 사회보험료 납부!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!

# 자동이체 신청하면 경품이 '팡팡'



### 행사 기간

2012년 4월 12일 부터 2012년 6월 11일 까지

### 행사 대상

2011년 11월 11일 ~ 2012년 6월 11일 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세대 또는 사업장 \*카드자동이체 제외



##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신청 경품 행사

##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안내

### 자동이체 신청 방법
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
- 유선 신청 1577-1000
- 인터넷 신청
 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(<http://si4n.nhic.or.kr>) 링크
  - 지로 홈페이지 (<http://www.giro.or.kr>)
  - 4대보험 연계센터 (<http://www.4insure.or.kr>)

### 경품내용 \*세금(제세공과금)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



### 당첨자 발표

- 당첨자 발표 : 2012년 7월 2일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(<http://si4n.nhic.or.kr>) 홈페이지에 팝업게시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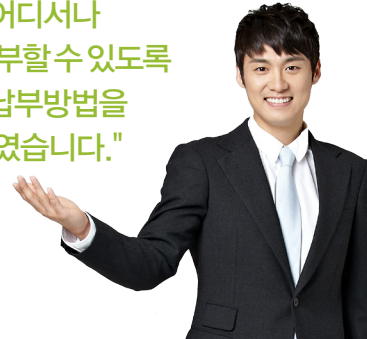
### 경품지급

####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를 통해 지급

※수취인 거부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 
당첨자 연결 불가 기간이  
당첨발표일로부터 2개월이  
경과하는 경우 당첨 취소



"언제 어디서나  
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 
다양한 납부방법을  
도입하였습니다."



사회보험 통합징수  
포털사이트에서 납부  
(<http://si4n.nhic.or.kr>)



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  
(기업, 우리, 신한은행)



편의점에서 납부  
(웨이마트, GS25시, 세븐일레븐  
\_우리,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)



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도  
보험료를 납부  
(기업,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)

## 자동이체 거래 약관

**제1조(목적)** 이 약관은 계좌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)과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"보험료"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·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 따른 부담금 및 「석면피해구제법」에 따른 부담금을 말합니다.
2. "합산자동이체"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(이하 "출금계좌"라 한다)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**제3조(자동이체 신청)**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(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) 3일(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)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, 합산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
③ 신청인이 제1항,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됩니다. 이 경우 자동이체 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.

**제4조(출금시기)** ①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출금되며, 미출금 또는 일부출금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,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(再)출금됩니다.

② 신청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출금일을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해당 출금일에 선(先)출금되며, 미출금 또는 일부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, 그 달 25일, 다음 달 10일 및 25일에 재(再)출금됩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금일이 토요일,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.

**제5조(출금)** ① 공단은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는 때에는 신청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공단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.

②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.

**제6조(출금 기준)** 자동이체 금액은 그 납기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해당 출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,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됩니다.

**제7조(출금우선순위)** 납기일에 공단에 이체되는 보험료 외에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**제8조(과실 책임)** ① 출금계좌의 예금 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한도를 포함한다)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② 신청인이 자동이체 신청 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**제9조(자동이체의 해지)** ①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자동 이체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(납부의무자 외의 자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이체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.

③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보험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중첩 합산자동이체 대상 보험 외의 보험에 추가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 합산자동이체는 공단이 직권으로 해지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추가된 보험을 포함한 합산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**제10조(정보의 제공)** ①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와 관련된 계좌정보(거래은행(금융기관명, 지점명, 계좌번호,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등)을 제공합니다.

② 공단은 민원상담 및 자동이체 신청(신규 변경·해지) 접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좌정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합니다.

**제11조(약관의 변경)**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,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**제12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**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
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